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문학산터널 축조공사)

대 의 리
CONFIDENTIAL
부 사 금 지

갑(주무관청) : 인 천 광 역 시

을(사업시행자) :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신 성

1110111111

1110111111

사업시행 협약서

사업명 : 문학산터널 축조 공사

사업현장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학익동 ~ 연수구 청학동

본 선 L = 1450 M

사업규모 :

터널 상행선 : 460 M

하행선 : 410 M

상기 비관리청 공사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시행함에있어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인 일성종합건설(주), (주)신성 (이하 "을"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협약하고 본 협약서 3부를 작성 기명날인후 "갑" "을" 각 1부씩 보관한다.

1995. 12. 9 .

갑 (주 무 관 청) : 인천광역시장 최 기 선 (인)



을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열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0-8

주식회사 신성

대표이사 김인식 (인)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내용

(문학산터널 축조공사)

제 1조 (목적)

이 협약은 비관리청 공사인 “문학산터널 축조 공사(이하“사업“이라 한다)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민자유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함에 있어 민자유치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와 민자투자자인 사업시행자 “일성종합건설(주), (주)신성“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총사업비”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이하“민자유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①항의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터널축조공사” (이하“공사“라 한다)라 함은 문학산터널 상행 460M, 하행 410M, 관리동, 요금소, 접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접속 시설(문학IC) 및 본공사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일체를 말한다.

제 3조 (사업의 시행)

① 이 사업은 민자유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시행한다.

② 이 사업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은 민자유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갑”이 실시계획을 고시할때 받은 것으로 한다.

제 4조 (실시계획)

본사업의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공고 제1994-248 “민자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⑤수행조건 2)항에 해당되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을”이 시행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공사의 착공)

“을”은 실시계획 확정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 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전에 공사시공설계서, 구조물표준횡단도, 시공방법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공사의 감독)

“을”은 민자유치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의거 “갑”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 결정하고, 공사준공정산후 확정한다.
- 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을”이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이 관계기관 요구등에 의한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과도한 통행료의 상승 또는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됨을 억제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기본계획의 보상비(136억원)를 초과하여 집행되는 보상비는 “갑”이 “을”에게 총사업비 확정후 지원한다.

제 8조 (중간검사)

“을”은 이공사 시공도중 년 4회의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이하“중간검사”라 한다)를 책임감리자로 부터 받아야 한다.

제 9조 (책임감리)

- ① “을”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이 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한다.
- ② 책임감리의 시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총사업비에 규정된 금액중 기성부분 및 완성부분 검사 결과에 따라 “을”이 지급한다.

제 10조 (부담 및 보상)

- ① “을”은 이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하며 이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등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을”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단,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는 “갑”이 담당한다.
- ③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이주대책을 수립, “갑”과 협의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제 11조 (보증금의 예치)

- ① “을”은 이공사 이행보증금조로 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은행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와 나머지 90%는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를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당좌수표를 예치한 경우 “갑”은 견질용으로 보관한다.
- ② “을”은 은행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등 기한부증권을 예치하는 경우 이들이 보증하는 이행기일까지 준공할 수 없을 때는 이행보증기간 만료 10일전까지 대체하여야 한다.
- ③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해당예치금을 추가예치 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갑”이 인정하는 중간검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 ⑤ “을”은 이공사 이행보증금을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 12조 (공사기간)

- ①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절대공기 24개월로 한다. 단, 천재지변, 보상지연,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갑”, “을”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보상)

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로 인하여 재시공등 공사비 초과 또는 공기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지원 해결한다. 손실의 정도가 크므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을”의 기투자액에 대하여 “갑”이 보상한다.

제 14조 (수탁시공)

동력선의 인입 및 통신시설을 위하여 한전 및 전기통신공사등 타기관에 수탁, 시공하는 추정사업비로 명시된 공종은 시공후 실비 정산한다.

제 15조 (사업비 변경)

- ① 협약체결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2호(지수조정율)의 방법에 의하고 '94년 가격을 계약단가로 하며 '95년부터 적용한다.
- ② “갑”이 시행한 기본설계금액(614억)과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이윤 및 기본설계금액으로 환산한 대안제시 부분을 합산한 금액(548억)과의 비율을 낙찰율로 한다.
- ③ 시공중에 공법변경, 타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등 총공사비의 증감요인 발생시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갑”, “을”은 상호협의 반영한다.

제 16조 (공사중 발생암의 처리)

- ① 터널 및 도로굴착시 발생하는 양질의 암석은 “을”이 이를 현장에서 원석 또는 골재로 생산하여 판매하며, 골재판매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갑”이 승인한다.
- ②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사토의 처리에 필요한 사토장은 “갑”이 지정 확보한다.

제 17조 (준공확인)

“을”은 해당사업이나 부대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15조 각호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지체상금)

“을”이 공사기간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잔여 순공사비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상하며, 계상된 지체상금은 준공시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제 19조 (시설물의 귀속)

터널IC 및 부대시설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제 20조 (무상 사용)

- ① “을”은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② 무상사용 기간은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을”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과 수익을 불변가격으로 작성한 후 실질할인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③ 예상통행량 미달, 대출금리상승 등으로 적정사용료 수준을 지키기 어렵거나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적정사용료 수준 및 무상사용기간이 유지되도록 “갑”이 지원한다.

제 21조 (관리운영권)

- ① “갑”은 무상사용기간 동안 “을”에게 터널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 ② “을”은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2조 (사용료 신고)

- ① “을”은 사용료 징수개시 20일전까지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21조 ②항에 따른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는 무상사용기간 확정시의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을 이내에서 “을”이 자율적으로 결정,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설운영중 이자율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시점과 비교하여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은 사용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3조 (시설물 유지관리)

- ① “을”은 준공보고서 제출시 감리자로 하여금 터널 및 부대시설의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작성케 하여 “갑”과 협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
- ② “을”은 시설관리 기간중 유료도로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을”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운영관리 경비의 초과는 무상사용기간에 추가 반영한다.

제 24조 (자료제출)

무상사용 기간중 “을”은 매년 공인회계사의 감리를 받은 유료도로 수지분석 현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현지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의 사용료 징수 실적은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시설물 인수인계)

- ① “을”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 “갑”이 지정하는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후 도로시설의 운영권을 인계한다.
- ② 시설점검결과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제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 26조 (이자율)

- ① “을”의 “자기자금 투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 ② “을”의 금융기관 차입자금 투자금에 대하여는 차입을 위하여 실지출된 비용을 이자율로 한다.
- ③ 이자율 적용시점은 보상비 납부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매분기 1일부로 한다.

제 27조 (별도 법인 설립)

- ① “을”은 본약정이후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별도 법인에 관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한다.
- ② “을”이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을”의 권리 및 의무는 별도법인이 승계한다. 이경우 “을”은 “갑”에게 본사업에 대하여 별도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 28조 (기타사항)

- ① “갑”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이 협약사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이 협약서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조례에 따르며 본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자본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시 수행조건 및 민자유치법 관련조항을 “을”은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착공후 1년이내에 본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경우 “갑”은 “을”이 부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⑤ “갑”과 군부대 사이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내용은 “을”이 이행한다. 이행에 따른 비용은 총사업비에 계상한다.
- ⑥ “을”이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건으로 금융기관과 협의시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갑”의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하여 “을”이 요청한 때에는 “갑”은 동의 또는 협조한다.
- ⑦ 설계심의시 추가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총사업비에 계상한다.